

중량물재생센터 연료전지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

의 안 번 호	2914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10월 15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하수찌꺼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연료전지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소화가스 직접연소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을 확대하고자 함
- 나. 이에 중량물재생센터에 소화가스를 활용한 연료전지 사업 추진을 위하여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중량물재생센터 연료전지 사업 주요내용

- 사업위치 : 중량물재생센터(관리동 인근 4,000㎡)
- 사업기간 : '21. 7. ~ '23.10.(27개월)
- 운영기간 : 최초 10년
 - ※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에 의거 추가 갱신가능(10년)
- 총사업비 : 약 1,024억(민간투자)
- 설비구성 : 연료전지(15MW), CO₂포집설비(17톤/일)
- 추진방식 : 사업비 100% 민간투자 + 서울시 부지제공(유상)

○ 기관별 역할

- 서울시 : 하수슬러지(건조재) 및 사업부지 제공, 행정지원
- 한국서부발전(주)(발전사) : 연료전지 설치·운영, 하수슬러지 펠릿 활용
- (주)에스코(도시가스사) : 바이오가스 정제 및 도시가스 공급, CO₂포집·판매

나. 그간의 추진사항

- 한국서부발전(주)·(주)에스코 사업계획서 제출 : '21. 7. 5.
- 사업추진 방향 검토 : '21. 7.~'21.10.

다. 향후 추진일정계획

- 양해각서(MOU) 체결 : 미정(동의안 의결 이후)
 - 내 용 : 물재생센터 연료전지 및 하수찌꺼기(펠릿) 활용사업 추진
 - 대상자 : 서울시, 한국서부발전(주), (주)에스코
- 실시협약 체결(서울시·사업자) : '22. 5.
- 시설 설치 : '22. 5.~'23.10., 상업 운전 : '23.11.~

라. 기대효과

- 대기오염물질(NO_x, SO_x 등) 감축 및 열회수 등으로 비용절감(10억/년)
 - 부지 임대수익(연간 1억), 연료비 절감(연간 8억), 온실가스 감축비용(연간 1억)
- 국내 최초로 소화가스에서 CO₂ 회수, 액화탄산 약 5천톤/년 생산
- 20년간 총 21억원 주민지원(기본지원금 3천만원/년, 특별지원금 1회 15억원)

- 관련근거 :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
- 지원대상 :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의 읍면동 지역
- 지원재원 : 정부에서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
- 지원금 배분 : 주변 지자체가 둘 이상인 경우 면적/인구 등 비율에 의거 배분
- 지원금 활용 : 공공/사회복지, 주민복지, 기업유치지원, 전기요금 보조 등

※ 연료전지사업과 연계한 슬러지 펠릿화로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 및 예산절감

- 하수슬러지를 펠릿(25톤/일)으로 처리시 약 50억원/년 예산절감 기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[법률 제17533호, 시행 '21.4.21.]

제26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- 「서울시 에너지 조례」 [법률 제7992호, 시행 '21.5.20.]

제21조(의회동의)

①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[행정안전부고시 제2019-89호, 시행'19.12.15.]

제7조(영구시설물의 축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·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.
- ②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<별표 2>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: 연료전지 연계한 하수슬러지 펠릿화 사업 동시 추진



※ 작성자 :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운영팀 이인화 (☎02-2133-3833)